



연 세 대 학 교

연구처

수신자 제보자

(경유)

제 목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통보(2023-02호)

1. 제보공문: 2023.3.7.

2. 이에 제보 내용에 따라 본 대학교에서 실시한 본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본조사 회의: 2023.7.5.(수), 2023.8.9.(수)

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2023.9.6.(수)

다. 본조사 결론

피조사자가 교신저자로 수행한 제보논문1, 2에 대하여 본조사위원회가 제보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함.

1. 제보논문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함(제보 논문 중 일부를 게재할 당시에는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자료의 중복사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표현만 다를 뿐 그 내용은 “부당한 중복게재”와 동일함).

1번 논문과 비교 논문을 비교하면 1번 논문의 참고문헌에 비교 논문이 기재되어 있으나, 두 논문은 연구대상이 동일하고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비교 논문의 연구결과가 1번 논문의 연구결과 중 일부(본문 3-1, 그림 1, 초록 3가지 중 2가지)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임. 그럼에도 피조사자는 비교 논문 이외에 1번 논문에 대하여도 별도의 연구업적(YRI 입력)으로 인정받았으므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함.

2. 제보논문2

가. 부당한 저자표시

제보자는 Patrick T. Ellinor 교수가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제보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피조사자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Patrick T. Ellinor 교수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는 등 연구에 기여하였으므로 피조사자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데이터의 위·변조

제보자는 제보논문에 사용된 일부 숫자에 오류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조사자가 데이터를 위·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2호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함.

제보자가 지적한 사항은 연구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연구의 단순 오류와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피조사자가 위·변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제보논문1, 2 >

	논문명
부당한 중복게재	(1) Impaired mobilization of bone marrow derived CD34 positive mononuclear cells is related to the recurrence of atrial fibrillation after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i>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i> , 162(3), 179-183 (2013) ▶ 비교논문 Non-ischaemic titrated cardiac injury caused by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of atrial fibrillation mobilizes CD34-positive mononuclear cells by non-stromal cell-derived factor-1a mechanism, <i>Europace</i> 11, p1024-1031 (2009)
부당한 저자표시 및 위·변조	(2) eNOS3 Genetic Polymorphism Is Related to Post-Ablation Early Recurrence of Atrial Fibrillation. <i>Yonsei Medical Journal</i> (2015) (철회논문)

3. 이의신청 안내

- 본 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관련규정 1부. 끝.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직인
생략

전문위원 **이해미**

연구지원팀장 **국민상**

센터장 **박종혁**

연구처장 **김지현**

전결 09/12

협조자

시행 연구윤리-704 (2023.9.12.)
우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화 02)2123-5143 전송

접수
/ HAIMI@YONSEI.AC.KR

/ <https://www.yonsei.ac.kr>
/ 공개